학생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



원 광 중 학 교

1. 목적

- 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처 능력과 공감 능력 향상
- 나. 학교 구성원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여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생활교육
- 다. 또래 활동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학교 문화와 인권존중의 학교 문화를 조성
- 라.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 마. 회복과 치유 중심의 프로그램 활성화
- 바. 학교와 연계 기관 간 상호 협조 체제 구축

2. 방침

- 가.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한 선순환적 예방교육
- 나.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 다. 다양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예방교육
- 라. 소통과 공감,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하여 갈등 요인 차단
- 마. 학교구성원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
- 바.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

3. 세부추진계획

가. 학생자치 캠페인 활성화

1) 운영 시기: 월별 1회 이상

2) 대 상: 전교생

3) 운영 방법

시기	대상	활동내용	주관
4월	전교생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바른생활부
5월	전교생	성폭력예방 캠페인	바른생활부
6월	전교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	바른생활부
7월	전교생	인성, 인권 캠페인	바른생활부
8월	전교생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 캠페인	바른생활부
9월	전교생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바른생활부
10월	전교생	성폭력예방 캠페인	바른생활부
11월	전교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	바른생활부
12월	전교생	인성, 인권 캠페인	바른생활부

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의식

1) 운영 시기: 1학기, 2학기

2) 대 상: 전교생

3) 운영 방법

시기	대상	활동내용	주관
1학기	학년별	교내리그(축구, 농구, 풋살)	건강생활부
2학기	학년별	교내리그(축구, 농구, 풋살)	건강생활부

다. 또래 활동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

1) 운영 시기: 연중

2) 대 상: 또래 활동 및 또래 상담 필요한 학생

3) 운영 방법

시기	대상	활동내용	주관
1학기	상담 학생	사제동행 산행	학생부
2학기	상담 학생	회복치유 캠프	학생부

라. 등·하굣길 인사 나누기를 통한 긍정적 관계

1) 운영 시기: 학기 중 매일 등교 및 하굣길

2) 대 상: 전교생

3) 운영 방법

가) 오전과 오후에 통학버스 탑승하는 학생들과 인사한다.

나) 교사는 학생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다정하게 인사한다.

다) 부드러운 표정과 말투, 억양 등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인사 나누기에 진심을 담도록 한다.

라) 교사는 학생이 다친 곳은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등을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상담, 치료, 보호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한다.

마. 학교폭력 상담실 운영

1) 운영 시기: 연중

2) 대 상: 학교폭력 상담 필요한 학생

3) 운영 방법

가) 학교폭력 상담 및 예방 등

나) 학교폭력예방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자체 활동 추진

시기	대상	활동내용	주관
연중	상담 학생	사제동행 산행	학생부
연중	상담 학생	학교 뒤뜰야영	학생부
연중	상담 학생	사제동행 봉사활동	학생부
연중	상담 학생	문화체험 활동	학생부

바. 쪽지상담과 설문조사 및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1) 쪽지상담

가. 일시: 월별 1회 이상

나. 대상: 전교생

다. 내용: 1차 담임교사, 2차 상담교사

라. 학교폭력예방 계획 및 활동에 설문조사 결과 적극 반영

2) 학교폭력예방 설문조사

가. 일시: 분기별 1회 이상

나. 대상: 전교생

다. 내용: 1차 학생부교사, 2차 담임교사, 3차 상담교사

라. 학교폭력예방 계획 및 활동에 설문조사 결과 적극 반영

3)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가. 본교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및 운영: 본교 2층 학생복지실 앞(개인정보보호에 유의)

나. 학교전담경찰관 홍보: 교내 포스터 부착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시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유관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시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사.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1)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구분	담당	일시	대상	추진 내용
홍보	담당 교사	연중	학부모	■ 사이버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발 송
예방 교육	담임	연중	학생	 학급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교육 내용: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예방 교육, 정보통 신 윤리교육, 스마트폰 사용지도 사이트 활용(동영상, 활동 자료 등) 도란도란(www.dorandoran.go.kr) - 도란도란TV- 사이버폭력 예방및정보 통신윤리교육자료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 콘텐츠.자료실- 스마트미디어중독예방, 인 터넷중독예방
캠페인	학생회	연중	학생	• 사이버언어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학생 자치 활동	담당 교사	연중	학생	 •전교 임원 회의, 학급 회의 실시 •의제(예시) - 사이버 가상공간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 그 외 사이버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예방,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된 의제학급별로 선정하여 회의하기

2)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가) 인터넷중독 예방 생활지도 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Wee센터		전문 치료 기관
진단 결과 분석 및 상담	Σ	집단 상담 및 교육	\searrow	진단 / 상담 / 치유지원	$\searrow \rangle$	치료 캠프 및 전문 상담

- 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학교규칙 제.개정 추진
- 다) Wee센터 게임과몰입 상담 전문인력 활용
- 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상담 지원
- 마)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학부모 교육 강화

아. 성폭력 예방 교육

- 1)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담임교사를 성교육 협력교사로 지정하고,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성교육 담당교사는 성교육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전달연수, 성교육 협력교사의 수업을 지원한(보건 교사가 구체적 계획 수립 후 추진)
- 2)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와 관련 담임 교사의 역할 분담

구분	성교육 담당교사	성교육 협력교사
담당	보건교사	담임교사
역할	. 성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 .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한 성교육 실시 . 성교육 관련 교육자료 제공, 전달연수, 성교육 협력교사 수업 지원	 학년별로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하여 학생수준에 맞도록 내용을 재구성하여 성교육 실시 국가성교육표준안에 근거한 성교육 내용 실시

3) 성폭력 사안 처리 유의 사항

- ◇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
- ◇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해야 한다. 관련학생의 비밀보호 및 자치위원회 미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 자체가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 ◇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
- ◇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학생들, 관련자 등에게 성폭력 사실을 주위에 확산할 경 우 피해자 2차 피해 발생 우려와 유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
- ◇ 성폭력 관련기관 연계(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시에는 피해자 동의 필요

4.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

가. 근거

대상		필수 시행 횟수 및 시간	방법	근거
01. 학교폭력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4시간) 이상	정규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포 함) 수업시간에 실시 권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예방교육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	제15조, 동법 시행령
	학부모	학기별 1회 이상	학교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	제17조
04. 인권교육	학생	학기별 2시간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편성 노동권 관련 내용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식 개선교육 포함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상		필수 시행 횟수 및 시간	방법	근거
	교직원	연 2회 이상	교원에 대한 직무 및 자격연수에 학생 인권교육 과정 편성	1120조 1122조
	학부모	연 2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 및 간담회	제30조~제32조
인성교육	교원	연 4시간 이상	교원연수계획 반영 연수 이수기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3항
	학생	시간 및 횟수 미정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03. 가정폭력	학생	연 1회 1시간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 편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예방교육	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 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2개월 이내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0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직원	연 1회 1시간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	아동복지법 시행 령 제26조
03.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생	연 1시간 이상	결과를 매년 3월 교육감에게 보고	아동복지법 시행 령 제28조
	학생	연 1회 1시간 이상	대면(對面)교육의 방법 포함 필수	성폭력방지 및 피
06. 성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 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2개월 이내 대면(對面)교육의 방법 포함 필수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06. 성희롱 예방교육	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대면(對面)교육의 방법 포함 필수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가족부 고시 제2008-2호)
06. 성매매	학생	연 1회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초등학생 제외)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예방교육	교직원	연1회 1시간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 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2개월 이내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06. 성교육	학생	학년별 연 15시간 이상 (성폭력예방 3시간 포함)	교육과정에 편성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포함	학교보건법 제9조
02.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학생	학년별 연 4시간 이상	'생명존중교육 길라잡이'교재를 이용 한 생명존중교육 강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2조1 항
안전교육	학생	연 51시간	학교안전 7대 표준안에 따른 영역 별 최소 1차시 이상 편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
	교직원	3년 15시간 이상	교직원 등: 3년 15시간 이상	학교안전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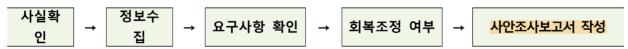
대상	필수 시행 횟수 및 시간	방법	근거
ഥ		3년 미만: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교육활동참여자: 연간 1회 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6-90호)

나. 추진 계획

대상	1학기	2학기
5F7H	▶한 학기에 1번	05kg
학생	1학기 중	2학기 중
⊐ X] O]	▶한 학기에 1번	
교직원	1학기 중	이하기 즈
학부모	▶한 학기에 1번	2학기 중
일구모	1학기 중	

5. 학교폭력 전담기구구성 및 운영

- 가.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나. 구성: 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전체 구성원의 1/3을 학부모로 구성) 다. 역할
 - 1) 학교폭력 사안접수(조사) 및 보호자 통보
 - 2) 교육(지원)청 사안보고 (48시간 이내), 사안조사 결과 학교장 보고
 -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회복조정)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4) 학교폭력 가해학생 4,5,6,8호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1,2,3,7호는 졸업과 동시 삭제라. 전담기구 개최 (분기별 의무개최 없음)
 - 1) 전담기구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학부모 참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2) 학부모 참석여부는 사안의 경중 및 특성에 따라 학교 자체 판단
- 3) 비밀유지: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마. 학교폭력 사안조사



- 사안조사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구속),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 반환, 손괴, 협박 여부 정서적 폭력: 피해의 지속성, 협박, 강요,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명의도용, 폭력(음란)성, 유포 여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인지 여부 -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화해)의 정도, 선도가능성 - 집단폭력, 흉기사용, 폭력서클, 행위의 주도성 등

- · 사실확인: 피·가해·목격학생 대상 면담 실시 및 <mark>확인서(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확보</mark>
 - ※ 설문조사 실시, 증거자료 수집(이메일, 채팅, 문자메시지 등),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 정보수집: 피·가해학생 교우관계, 학교생활, 사안경험 유무, 상담내역, 특이사항 등
 - ※ 정황파악: 피·가해학생의 현재 상태 및 대응능력, 힘의 불균형 등을 파악
- · 요구사항 확인: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 및 방향성 파악
- · 회복조정: 관계개선 및 회복을 위한 조정의사 확인 및 조정 지원 요청 (회복조정지원단 신청)
- · 보고서 작성: 면담일지 등을 토대로 <mark>사안조사보고서 작성</mark>
- 피·가해학생 긴급조치
 - · 결정권자: 학교장
 - · 피해학생: 제1호 (심리상담), 제2호(일시보호),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3호 (교내봉사), 제5호 (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
- ✓ 긴급조치 중, 출석정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 가해학생 긴급조치는 추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함
 - 관할구역 내 다수의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 사안보고 : 학교별 사안보고(교육지원청으로 48시간 이내)
- ✓ 1차 사안조사 : 학교별 1차 사안조사 실시 및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 관련학교 담당자 협의 : 1차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결과 공유 등

관련학생 측 모두가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학교장 자체해결 부동의
-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학교별 내부결재)	- 학교별 사안조사 내용 및 쟁점사항 등 협의 - 학교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일 조정 (00일까지 요청) - 학교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공문 발송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① 전담기구 사안 조사 충족 - 사안조사보고서 내부 - 자체해결동의서 보고 (피해상황이 있고) 결재 사 심의결과보고서 안 ② 관련학생 서면 확인 인 (위원회 개초를 원하지 않으며) 지 ③ 전담기구 요건 심의 미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심의위원회 (경미한 사안에 해당) 충족 개최 - 3주 이내 개최(1주 연기 가능)

* 전담기구는 사안인지(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필요시 1주 연장 가능) - 기준: 관련학생 측 모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 기준)

-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진단서 회수 불가)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피해가 복구되거나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하고 피해학생 측이 인정)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전담기구 위원들이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 처리 절차
 - ·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mark>사안조사보고서</mark>, <mark>자체해결동의서</mark>, <mark>심의결과보고서</mark> 첨부) ※ 내부결재 → <mark>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mark> →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서면, 유선, 문자 등)
 - 유의사항
 - · 학교장 긴급조치 시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는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 (내부결재)
 - ·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 · 동일 시안에서 관련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학생이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어야 자체해결 가능
 - · 전담기구는 사건인지 후, 2주 이내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완료 및 결정 (필요시 1주 연장)
 - ㆍ 새로운 사실 확인 및 피해복구 약속을 불이행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의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 학교 간 사안조사 공유(협조) → 전담기구 심의 → 학교 모두 학교장 자체해결로 된 경우만 종결
- ✓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